

제 1808 호
1994. 3. 5.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이원종
편집인 : 공보관 김우석
전화 : 731-8111~3
인쇄 : 한국컴퓨터산업(인쇄)주식회사
전화 : 273-8111~3

시보

차례

- 훈 령
 - 제 791 호 서울특별시상품권반행동목사부처리규정 3
 - 제 792 호 서울특별시시정발전확상제도운영규정제지규정 7
- 공 고
 - 제 1994-69 호 기술용역사업집행계획광고(변경및추가) 8
- 구 고 시
 - 제 1994-3 호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선)실시계획인가(동대문) 9

<이면계속>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함께 하는 고통분담 함께 웃는 밝은내일”

제 1994-6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성동)	12
제 1994-6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구로)	15
제 1994-6 호	도시계획사업(신길근린공원)실시계획변경인가(영등포)	15
제 1994-7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방수설비)저적승인및고시(구로)	21
제 1994-7 호	도시계획시설(도림계3어린이공원외1개소)조성계획 결정저적승인(영등포)	22
제 1994-9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실시계획변경인가(양천)	25
제 1994-9 호	하천점용허가(송파)	26
● 구 공 고		
제 1994-6 호	무주부동산공고(강동)	26
제 1994-21 호	도시계획사업(도림계3어린이공원외1개소)실시계획인가를 위한공판공고(영등포)	27
제 1994-25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공고(강서)	30
제 1994-28 호	도시계획시설의설치관리자공고(구로)	30
제 1994-42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공고(도봉)	31
제 1994-49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공고(서초)	31
제 1994-50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공고(서초)	31
제 1994-62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공고(강남)	32
● 사업소고시		
제 1994-8 호	하천점용허가	32
● 인사발령		

훈 령

서울특별시상품권발행등록사무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4. 3. 5

서울특별시장 이원중 ㉸

●서울특별시훈령제791호

서울특별시상품권발행등록사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품권법에서 규정 한 상품권 발행등록 사무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품권 발행등록"이라 함은 발행하고자 하는 제정액을 등록관서에 등록함을 말한다.
2. "등록번호"라 함은 등록관서의 등록대장에 최초로 등재된 번호를 말한다.
3. "발행번호"라 함은 상품권 발행자가 상품권면마다 달리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말하며 이 경우 중복 부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조(적용범위) 상품권 발행등록 사무처리에는 상품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상품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상품권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서울특별시상품권발행등록사무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등록신청의 수리 또는 거부) ①상품권 발행등록신청서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수리 또는 거부하여야 한다.

②등록수리는 서류 검토한 후 결정권자의 최종 결재를 얻어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

라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발행등록대장에 등재하여 누년 일련번호로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상품권발행등록관리대장에 내용을 기재한 후 신청자에게 통보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상품권의 발행등록 거부사유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사업자등록을 편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
2. 기타 사업장 규모 등에 비추어 상품권 발행시 소비자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상품권의 규격 및 기준) 상품권의 규격 및 기준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저질은 쉽게 훼손되지 아니하는 특수한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색상은 종류별로 다르게 인쇄하여야 한다.
3. 권면에 등록관서·등록번호·발행형식(제3차발행형 또는 자기발행형), 등록일자를 인쇄하여야 한다.
4. 위조 또는 변조 방지를 위하여 발행자가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특수표시를 하여야 한다.
5. 발행일자는 아라비아숫자로 인쇄하거나, 또는 지워지지 않는 용액을 사용하여 일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6. 수입인지세의 사전 납부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품권면에 관계법령에 따라 수입인지 납부필 표시를 인쇄할 수 있다.
7. 물품상품권은 품질·규격·수량 등 구체적인 내용과 그 가액액, 용역상품권은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가액을 명확히 표시하여 발행자와 소비자간에 상한시 은쟁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

제6조(상품권발행 폐지의 신고 등) 법 제9

조제1항 내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권의 발행을 중단·폐지하거나 법인의 해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등록 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발행보증금의 사전 공탁 면제범위)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권 발행자의 신용상태를 참작하여 발행전 사전 공탁을 명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자본잠식(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100분의 100 미만인 법인)이 된 법인인 경우
2. 등록일 전 1년 이상 상환대상 물품을 객조 또는 판매, 영업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 행위를 하지 아니한 자
3. 개인사업자

제8조(회수상품권의 관리) ①상품권발행자는 상환의무를 이행하고 상품권을 회수하

었을 때에는 100매 단위로 종류별·금액별·발행번호순으로 천공 후 회수일자를 명기하여 3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일을 경과하여 회수상품권을 폐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수상품권 폐기신청을 하여 등록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과태료 처분기준)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장부의 작성 및 보존) 상품권 발행 등록 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등록상품권결본을 작성·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금액표시 상품권 발행 및 상환사무규정요령(고시 제140호, 1974. 9. 26)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과태료 부과 기준

단위: 원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 태 료	비 고
1.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명, 상호, 주소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한 자	법 제41조 제2항제1호	500,000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발행형 상품권의 발행자 지위를 순계하였을 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한 자	법 제41조 제2항제1호	300,000	
3.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권 발행 업무를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한 자	법 제41조 제2항제1호	500,000	
4.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발행형 상품권을 발행하는 법인이 합병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한 자	법 제41조 제2항제1호	500,000	

위 반 행 위		태당법조문	과 대 료	비 고						
5.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발행권 상품권을 발행하는 자가 발행을 폐지하거나 합병 이외의 사유로 해산할 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한 자		법 제41조 제2항제1호	500,000							
6. 법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한 상품권 발행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한 자		법 제41조 제2항제1호	500,000							
7.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한 자		법 제41조 제2항제1호	500,000							
8.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실행의 청구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한 자		법 제41조 제2항제1호	300,000							
9.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권발행 실적 등을 보고한 자 아니거나 허위 보고한 자		법 제41조 제2항제2호	300,000							
10.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 제2항제3호	500,000							
11.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제출, 필요한 보고를 명했을 때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한 자		법 제41조 제2항제2호	500,000							
(별지 제1호 서식)										
상품권발행등록대장										
등록일	등록번호	발 행 자			상품권 종류	발행 형식	상환 장소	사 전 공탁액	전화 번호	확인
		상 호	주 소	성 명						

(별지 제2호 서식)

상표권발행등록관리대장

등록번호	발행형식	등록연월일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사업연도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월일	상표권종류	등 록				발 행				상 환				미상환	
		금 회		누 계		금 회		누 계		금 회		누 계		대수	금액
		발행번호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별지 제3호 서식)

○ ○ 회 사
(전화번호)

분류기호 19

수신 서울특별시상
 참조 소비자보호과장
 제목 회수 상표권 폐기 신청

1. 서울특별시상표권발행등록사무처리규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회수상표권을 다음과 같이 폐기하고자 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권 종류 (종류, 금액별)	회수매수	폐기매수	금 액	비 고
				회수상표권 목록 및 폐기대장 자체 보관

끝

○ ○ 회 사 대표이사 인

(별지 제4호 서식) 상품권발행등록공탁금관리대장											
등록번호			발행정식			등록연월일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사업연도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월일	처리 번호	등록 누계액	발행 누계액	미상환 잔액	법정공탁액			금회 공탁액	반환	공탁액계	확인
					사 전	사 후	합 계				

<p style="text-align: center;">(개정 이유 및 주요골자)</p> <p>1. 제정이유 상품권 발행등록 사무취급에 관하여 상품권 법령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 <p>2. 주요골자 가. 상품권 발행등록 신청의 거부사항 기준을 정하여 등록업체와의 분쟁을 방지하고 상품권의 남발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토록 함(안 제4조). 나. 상품권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상 품권의 규격 및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상품권의 발행등록에 따른 사전공 탁금 면제 범위를 정하여 신용도가 높은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발 행업체와의 분쟁을 방지토록 함(안 제7조).</p>	<p>라. 회수된 상품권을 재이용할 수 없 도록 회수 상품권 관리를 규정함(안 제8조). 마.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하여 과 태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안 제9조).</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시정발전착상제도운영규정폐지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4. 3. 5 서울특별시장 이원종 ㉔</p> <p>●서울특별시훈령제792호 서울특별시시정발전착상제도운영 규정폐지규정 서울특별시시정발전착상제도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부 칙</p>
---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1. 폐지이유

- 현재 제안·착상, 2종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수렴 제도가 시정시책 활성화 방침(시장 방침 제1548호, 93. 9. 27) 및 서울특별시제안규칙개정규칙 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제안제도로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 착상의 제출, 심사, 채택시상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시정발전착상제도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코자 함.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1994-69호

기술용역사업집행계획공고(변경및추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1994-44호(94. 2. 8)로 공고한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및 추가 공고합니다.

1994. 3. 5
 서울특별시장

(단위: 백만원)

구분	용역명	시행부서	사업주요내용	예산규모		입찰 예정 시기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총 사업비	'94 사업비		
당초	서초역~동작대로 간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	도로 계획과	· 도로건설 ┌ 폭 30m └ 연장 2,250m (터널 450m)	385	385	94. 3.	예산회계법령 및 건설기술관련 법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시행
변경	서초역~동작대로~관악로간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	도로 계획과	· 기본 및 실시계획 구간 -서초역~동작대로 간 도로개설 ┌ 폭 30m └ 연장 2,250m (터널 450m) · 기본설계구간 -동작대로~관악로 간 도로개설 ┌ 폭 30~40m └ 연장 2,600m (터널 1,100)m	545	545	94. 4.	"
삭제	잠실대교~시계간 도로건설 실시계획 용역	종합건설 본부	· 도로신설 ┌ 폭 8차선 └ 연장 5,100m	1,800	1,800	94. 6.	

구분	용역명	시행부서	사업주요내용	예산규모		입찰 예정 시기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총 사업비	'94 사업비		
당초	잠실대교~토평리간 도로 실시설계 용역	도로 계획과	폭 6~8차선 연장 6,900m	1,800	1,800	94. 3.	예산회계법령 및 건설기술관련 법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시행
변경	잠실대교~천호대교 도로 실시설계 용역	종합건설 본부	도로신설 폭 35.7m 연장 3,600m	500	500	94. 4.	"
변경	천호대교~토평리간 도로 실시설계 용역	종합건설 본부	도로신설 폭 28.6m 연장 3,200m	1,000	1,000	94. 4.	"
당초	용비교 보수 실시 설계 용역	도로 시설과	교량전면개수 폭 20m 연장 6,000m	320	320	94. 3.	"
변경	용비교, 동작교, 한남대교 보수 실시 설계 용역	동부건설 사업소	교량부분 및 전면 개수 공사	450	450	94. 3.	"
추가	강남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 타당성조사 및 노선계획	도로 계획과	도로건설 폭 28m 연장 32.5km	400	400	94. 4.	"
추가	청계고가도로 보수공사 책임감리 용역	종합건설 본부	상관보수 20,944㎡ 하부범 보수 197개소	700	200	94. 5.	"
추가	신당교차로 입체시설 책임감리 용역	"	지하차도 폭 23m 연장 490m	520	161	94. 5.	"
추가	개봉지하차도 건설공사 책임감리 용역	"	지하차도 폭 16m 연장 626m	500	200	94. 6.	"

구 고 시

● 동대문구고시제 1994-3호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공고 제1994-32호

(94. 2. 7)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공람 공고한 바 있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294-6~294-88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토목과 및 건설 관리과에 비치하고 아래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4. 3. 5
동대문구청장

가.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294-6~294-88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건설)

명칭: 답십리동 132~294간 도로건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폭 10m, 연장 40m

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마. 사업착공 및 준공연월일: 인가일~1995년 12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사. 토지 또는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소재지: 답십리동

연번	지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의 권리명세
1	294-215	대	220	220	도봉구 쌍문동 59 한양 3-1207	최유석	성북구 성북2 동 16	김남숙	가 처분
2	294-213	묘	43	43	도봉구 쌍문동 323-11	박영하			
3	294-224	대	84	84	도봉구 쌍문동 294-190	조양순			
4	294-223	대	41	41	도봉구 쌍문동 294-168	최우영			
5	294-226	대	5	5	도봉구 쌍문동 294-128	지여남			
6	294-218	대	61	61	도봉구 쌍문동 294-89	문대회			
7	294-220	묘	30	30	도봉구 쌍문동 294-128	지여남			
8	294-221	묘	19	19	도봉구 쌍문동 107	박영하			
9	294-217	대	110	110	도봉구 쌍문동 294-88	지재분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사

○소재지: 담십리동

연번	지 번	물건의 종 류	규격및 종 류	수량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294-6	가 옥 담 장 수 목	기 와 / 벽 돌	27 1식 1식	도봉구 쌍문동 59 한양④ 3-1207	최원식	성북구 성북2 동 16	김남숙	가치분
2	294-190	가 옥 부 업 화장실 담 장 철 대문	기 와 / 블 러 슬 레 트 / 블 러 재	57 10 4 1식 1식	도봉구 쌍문동 294-190	조영순			
3	294-168	가 옥 철 대문	기 와 / 블 러	36 1식	도봉구 쌍문동 294-168	최우영			무
4	294-193	가 옥	슬 레 트 / 블 러	4	도봉구 쌍문동 294-128	지여남			무
5	294-128	가 옥 장 독 대 담 장 철 대문	기 와 / 블 러 슬 라 브 / 블 러	3 5 1식 1식	"	"			무
6	294-89	가 옥 장 독 대 담 장 철 대문	기 와 / 블 러 슬 라 브 / 블 러	45 4 1식 1식	도봉구 쌍문동 294-89	문대회			
7	294-88	가 옥 "	슬 레 트 / 블 러	17 (2층) 25 (1층)	도봉구 쌍문동 294-88	장기선			무

연번	지 번	물건의 종류		규격 및 종류	수량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종류	종류			주소	성명	주소	성명	
7	294-88	가옥	기와	/ 불력	42	도봉구 쌍문동 294-88	장기선			무
		"	"	"	8					
		"	"	"	5					
		장독대	슬라브	/ 불력	4					
		화장실	슬레트	/ 불력	1					
		철대문			1식					
8	294-88	가옥	슬레트	/ 불력	13	도봉구 쌍문동 294-88	김정란			무
		화장실	"	"	2					
		창고	"	"	1					

영업손실 대상 물건조사

○ 소재지: 동대문구 답십리동

연번	소재지	건물주	업소명	업종	대표자	비고
1	294-88	김정란	오복사	공인중개사	이용우	무허가

●성동구고시제 1994-6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성동구공고 제1994-35호(94. 4. 4)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에 따라 공람공고한 바 있는 뚝섬길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25조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성동구 토목과,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4. 3. 5

성동구청장

가. 사업개요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규모	비고
서울시 성동구 자양동 635-24~610-10간	- 도시계획사업(도로) - 뚝섬길 도로확장공사	도로확장 폭=15→20m 연장=414m	

- 나.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 다. 사업착수 및 준공연월일: 1994년 2월

19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

지,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아래
다.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아래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수용 또는 사용면적 (㎡)	토 지 소 유 자		소유권 이 외의 권리 명세	토·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성동구 자양동	635-24	대	30.4		서울특별시				
2	"	635-29	"	30.6		"				
2	"	636	"	61.0		"				
4	"	635-30	"	36.4		"				
5	"	616-49	"	37.0		"				
6	"	606-8	"	45.4		"				
7	"	616-48	"	32.6		"				
8	"	606-7	"	30.1	성동구 자양동 328-2	배 규 인	압류		용 산 세무서	
9	"	616-47	"	25.8		서울특별시				
10	"	606-6	"	29.5		"				
11	"	616-45	도로	7.5	마포구 연남동 566-49	임 종 길				
12	"	616-44	대	25.4		서울특별시				
13	"	606-5	"	30.6		"				
14	"	616-43	"	31.3		"				
15	"	606-4	도로	10.0	성동구 금호2 가 817	조 성 현				
16	"	606-3	대	28.2		서울특별시				
17	"	616-42	도로	10.0		"				
18	"	616-41	대	31.6		"				
19	"	616-40	"	29.8		"				
20	"	606-1	"	29.8		"				
21	"	616-39	"	34.1		"				
22	"	616-46	"	29.7		"				
23	"	607-8	"	34.6		"				
24	"	615-44	"	29.6		"				
25	"	607-7	"	28.1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수용 또는 사용면적 (㎡)	토 지 소 유 자		소유권이 외의 권리 명세	토·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26	성동구 자양동	607-6	대	28.1		서울특별시				
27	"	607-5	"	27.4		"				
28	"	607-4	"	38.9		"				
29	"	607-3	"	31.1		"				
30	"	615-19	"	10.0		"				
31	"	615-13	"	32.7		"				
32	"	607-2	"	29.7		"				
33	"	615-12	"	29.7		"				
34	"	607-1	"	30.2		"				
35	"	607	"	37.3		"				
36	"	615-4	"	30.5		"				
37	"	609-24	"	38.3		"				
38	"	608-6	"	69.4		"				
39	"	609-10	"	30.5		"				
40	"	608-4	"	27.2		"				
41	"	608-3	"	22.7		"				
42	"	608-2	"	1.8		"				
43	"	609-7	"	45.9		"				
44	"	608	"	156.7	서대문구 창천 동 4-118	최 등 부				
45	"	610-11	"	65.0		서울특별시				
46	"	610-10	"	55.1		"				

건 물 조 서

연번	소재지 및 지번	구조 (지붕/ 벽체)	주 용도	층별면적		총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 외의 권리 명세	토·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		비 고
				층	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성동구 자양동 607-5	슬라브 / 벽돌	점 포 주 거	1	3	6	성동구 자양 동 347	김종만				
				2	3							
2	615-12	슬라브 / 벽돌	점 포 주 거	1	21.2	42.4	구로구 시흥 동 948-25	장춘기	근저당 권설정	중구 남대문 로2가 9-1	국민은행 (도곡동· 중앙동 지점)	
				2	21.2							

연번	소재지 및 지번	구조 (지붕/벽체)	주 용도	층별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소유권이 의 권리 명세	토·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		비고
				층	면적 (㎡)				주소	성명	
3	성동구 자양동 615-13	슬라브/벽돌	점포 주거	1	24.9	성동구 자양동 643-14	서영자				
				2	24.9						
4	616-40	슬라브/적벽조	점포 주거	1	30.1	성동구 자양동 616-36	박현규				
				2	30.1						
5	616-41	슬라브/벽돌	점포 주거	1	33.3	성동구 자양동 616-36	박충규				
				2	33.3						
6	616-44	슬라브/벽돌	점포 주거	1	20.2	성동구 자양동 616-33	이종건	근저당 권설정	자양동 621-7	자양1동 새마을 금고	
				2	20.2						
7	616-47	슬라브/벽돌	점포 주거	1	19.9	마포구 용강동 121-2 다-470	배길환				
				2	19.9						
8	606-3	슬라브/벽돌	점포 주거	1	14.9	성동구 자양동 606-14	김동욱 최근성	근저당 권설정	종구 태평로 2가 150	삼성생명 보험(주)	
				2	14.9						
9	609-10	슬라브/적벽돌	점포 주거	1	24.8	성동구 자양동 609-11	윤명례	근저당 권설정	인천시 남동구 삼일동 484 블록 3-1	남동단위 협동조합	
				2	24.8						

●구로구고시제1994-6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4. 3. 5

구로구청장

- 사업명: 민영주택 건설사업
- 사업주체
가. 상호: (주)덕산토건 대표 김종각
나.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530-12
-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가. 위치: 구로구 가리봉동 148-1 외 4필지

- 나. 대지면적: 3,220.20㎡
- 다. 건축연면적: 10,261.9㎡
- 라. 규모: 13층 아파트 1개동 9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1994. 2. 22~1995. 4.

●영등포구고시제1994-6호

도시계획사업(신길근린공원)실시계획 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240호(93. 8. 7)로 공원조성 계획변경 결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1993-33호(83. 8. 31)로 지적승인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42-1 일대 신길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신길근린공원)을 변경실시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고 제1993-108호(93. 9.

- 15)로 공람공고 완료하고,
- 2.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인가하였기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공원 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4. 3. 5

영 등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42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신길근린공원)

다. 사업규모: 별첨 시설조서(생략)

라. 사업시행자: 영등포구청장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 1997.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주소·성명(별첨조서): 생략

도시계획시설(신길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시설별 총괄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19,588	7,014.5	1	74.4	74.4	164	19,588	7,083.8	2	157.4	157.4	164	-시설물 36.1(40%) -건축물 0.8(20%)
기타시설	소계	2,760	2,760				2,746.3	2,746.3					
	도로	1,795	1,795				1,781.3	1,781.3					
광장	965	965					965	965					
조경시설	83.5	83.5				13	83.5	83.5				13	
휴양시설	680	680				86	763	763	1	83	83	83	
유희시설	625	625				3	625	625				3	
운동시설	2,718	2,718				8	2,718	2,718				8	
폐기시설	6	6				3	6	6				3	
관리시설	142	142	1	74.4	74.4	51	142	142	1	74.4	74.4	51	
유치원기타	12,573.5						12,504.2						63.8(60%)

시설조서(변경결정)

구분	시설명	부호	변경 전						변경 후								
			위치 (선집중)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선집중)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	규모
계				19,588 (648)	7,014.5 (648)		74.4	74.4	164		19,588 (648)	7,083.8 (648)		2동	157.4	157.4	164

39-17

제1808호

1

1

1994.3.5

구분	시설명	면						경				전				변						경				후														
		부호	위 치 (선경동)	부지면적 (㎡)	시·선 면적 (㎡)	구조	규모	건축용(㎡) 바닥 면적	공차용 (기)	부호	위 치 (선경동)	부지면적 (㎡)	시·선 면적 (㎡)	구조	규모	건축용(㎡) 바닥 면적	공차용 (기)	부호	위 치 (선경동)	부지면적 (㎡)	시·선 면적 (㎡)	구조	규모	건축용(㎡) 바닥 면적	공차용 (기)															
기	소	계			2,760 (214)	2,760 (214)														2,746.3 (214)	2,746.3 (214)																			
	면	도	로	전지역	1,795 (214)	1,795 (214)			B=1 ~7m											전지역	1,781.5 (214)	1,781.5 (214)			B=1 ~7m															
시	설	광	장	가	965	965													가	965	965																			
	수	계	1	가-1	426-3	340	340												가-1	426-3	240	340																		
	부	진	입	광	장	가-2	산152-1	40	40										가-2	산152-1	40	40																		
소	계				83.5 (234)	83.5 (234)													가-3	423-8	585	585																		
	조	경	파	교	라	426-3외 6필지	+	(198)	(198)										11	426-3외 6필지	(198)	(198)																		
시	설	물	터	산152-1	(36)	(36)													1	산152-1	(36)	(36)																		
	분	수	대	426-3	83.5	83.5													1	426-3	83.5	83.5																		
휴	양	소	계		680	680													86		763	763																		
	휴	계	소	나		680	680												나		680	680																		
	휴	계	소	1	나-1	341-4	110	110											나-1	341-4	110	110																		
	휴	계	소	2	나-2	산152-1	90	90												나-2	산152-1	90	90																	
	휴	계	소	3	나-3	426-3	130	130												나-3	426-3	130	130																	
시	설	휴	계	소	4	나-4	425-45외 1필지	220	220										나-4	425-45외 1필지	220	220																		
	휴	계	소	5	나-5		130	130												나-5		130	130																	
	등	의	자	전지역															53	전지역																				

구분	시설명	면적										부속								
		부호	위 치 (신길동)	부지면적 (㎡)	시 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신길동)	부지면적 (㎡)	시 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 면적	연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권의자 노인정								33										33	
	소 계			625	625				3			625	625						3	
유역	어린이 놀이터	다	423-8	625	625					다	423-8	625	625				경량 콘크리트 1층	83	83	
시설	조합놀이대								1										1	
	정구장								1										1	
	시아소								1										1	
	소 계			2,718 (200)	2,718 (200)				8			2,718 (200)	2,718 (200)						8	
운동	다목적 운동장	라	산 153 인원	2,592	2,592					라	산 153 인원	2,592	2,592							
시설	농구대	라-1	426-3외 6필지	(200)	(200)				1	라-1	426-3외 6필지	(200)	(200)						1	
	다이아트랙	마	"	126	126					마	"	126	126							
	평행봉	마-1	"						1	마-1	"								1	
	천 봉	마-2	"						1	마-2	"								1	
	무릎커기	마-3	"						1	마-3	"								1	
	다리벌리기	마-4	"						1	마-4	"								1	
	윗몸 일으키기	마-5	"						1	마-5	"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부호	위 치 (신경동)	부지면적 (㎡)	시 설 면 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신경동)	부지면적 (㎡)	시 설 면 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 면적	연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균형잡기	바-6	426-3외 6필지							1	바-6	426-3외 6필지							1
	메달러 건너기	바-7	"							1	바-7								1
편익	소 계			6	6					3			6	6					3
시설	음수대	사	산153외 2필지	6	6					3	사	산153외 2필지	6	6					3
	소 계			142	142		74.4	74.4	51				142	142					51
관리	관리사무실	아	342,347	142	142	1동	74.4	74.4		아	342,347	142	142	1동	74.4	74.4			
	및화장실																		
	공원안내판								2									2	
시설	방향표지판								5									5	
	공원동								22									22	
	볼라드								18									18	
녹지	문주								4									4	
	울타리						598m							598m					
및 기타	소 계			12,573.5									12,504.2						
				12,573.5									12,504.2						

도 로 조 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계			792	1,795				
변경					785.15	1,781.3				
당초	소로	소계			578	1,581				
변경					571.15	1,567.3				
당초		3류	1	7	31	217	진 입 로	주택가	소로 3-1	
"		"	2	6	10	60	"	중앙광장	부진입광장	
"		"	3	6	35	210	"	주진입광장	중앙광장	
"		"	4	3	8	24	시 설	산책로 4-4	다목적운동장	
"		"					연 결 로			
"		"	5	3	12	36	"	중앙광장	녹지대	
"		"	6	3	53	159	진 입 로	중앙광장	기존도로	
"		"	7	3	17	51	"	휴게소-1	녹지대	
"		"	8	2	45	90	시 설	휴게소-4	주진입광장	
"		"					연 결 로			
"		"	9	2	40	80	"	중앙광장	휴게소-4	
"		"	10	2	14	28	"	휴게소-2	중앙광장	
"		"	11	2	14	28	"	소로 3-12	휴게소-2	
"		"	12	2	80	160	"	중앙광장	소로 3-2	
"		"	13	2	35	70	"	소로 3-5	소로 3-14	
"		"	14	2	80	160	"	소로 3-15	소로 3-12	
"		"	15	2	47	94	"	소로 1-1	소로 3-7	
변경			2		40.15	80.3	"	노인정	소로 3-7	
당초			16	2	57	114	"	휴게소-3	중앙광장	
당초	산책로	소계	1	1	214	214				
"			1	1	21	21	산 책 로	산책로 4-2	소로 3-8	
"			2	1	45	45	"	소로 3-3	소로 3-9	
"			3	1	12	12	"	소로 3-16	소로 3-3	
"			4	1	90	90	"	소로 3-4	소로 3-5	
"			5	1	26	26	"	중앙광장	휴게소-5	
"			6	1	20	20	"	관리사무실	산책로 4-5	

●구로구고시제1994-7호 승인및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담수설비) 지적 :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23호(94. 1. 27)

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과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7호(94. 1. 10)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고시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4. 3. 5
구로구청장

가.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방수설비	구로구 고척동 631 일대	16,527.2	합 161.2㎡
변경	"	구로구 고척동 631-17 일대	16,366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구분	등급	유형	세분의 시설	번호	폭원 (m)	연장 (m)	기점	종점	비고
기정	대로	1	일반 도로	51	35	1,950	구로구 구로동 (대 1-45)	구로구 구로동 (대 3-18)	구로동 503-7 도로모퉀이 결정길이 10m
변경	대로	1	"	51	35	1,950	"	"	

● 영등포구고시제 1994-7호

도시계획시설(도립제3어린이공원의

1개소) 조성계획결정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28호(94. 2. 12)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립 제3어린이공원, 대림 제3어린이공원 조성계획에 의하여 도시공원법 제3조와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공원녹지과 및

지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4. 3. 5

영등포구청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립 제3어린이공원의 1개소) 조성계획 결정조서 별첨 시설조서와 같습니다.

나. 도시계획시설(도립 제3어린이공원의 1개소) 조성계획 결정도면 영등포구 공원녹지과 및 지적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립 제3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시설별 총괄표(최초결정)

(단위: ㎡)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3,071	360				103	시설률 11.72<60
조경시설	198	134				6	
휴양시설	34	34				48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유회시설	250	169				8	
편의시설	2	1				1	
운동시설	22	22				5	
관리시설						35	
녹지 및 기타	2,565						

시 설 조 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계				3,071	360					193	시설률 : 11.72 < 60%
조경 시설	소 계			198	134					6	
	파고라	①	도림동 23-2 외 2필지	(198)	(134)	목재				(6)	
휴양 시설	소 계			34	34					48	
	의자	②	전 지역	(34)	(34)	목재				(48)	등의자 24조 평의자 24조
유회 시설	소 계			250	169					8	
	조합 놀이대	③	도림동 23-4 외 1필지	(196)	(131)	목재				(2)	
	청글집	④	도림동 23-7 외 1필지	(36)	(24)	철재				(2)	
	사이소	⑤	도림동 23-2 외 1필지	(12)	(8)	철재				(2)	
	래더	⑥	도림동 23-6 외 1필지	(6)	(6)	목재				(2)	
	편의 시설	소 계			2	1					1
운동 시설	소 계			22	22					5	
유회 시설	침수대	⑦	도림동 23-7	(2)	(1)	콘크리트				(1)	
	철봉	⑧	도림동 23-1			철재				(2)	
	균형대	⑨	도림동 23-7 외 1필지			목재				(2)	
	쌍문장	⑩	도림동 23-2	(22)	(22)					(1)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 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 고
								바닥 면적	연 면적		
관 리 시 설	소 계									35	
	공원동 ①		전 지 역			주 철				(10)	
	블라드 ②		"			화강석				(10)	
	휴지동 ③		"			스틸레스				(15)	
녹지 및 기 타	소 계			2,565							
	녹 지			(2,565)							

도시계획시설(대림 제3어린이 공원) 조성계획 결정시설별 총괄표(최초결정)

(단위: ㎡)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기)	비 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6,810	317				90	시설률: 4.65<60%
조경시설	278	174				7	
휴양시설	86	61				38	
유희시설	122	81				3	
편익시설	1	1				1	
운동시설						3	
관리시설						38	
녹지 및 기 타	6,323						

시 설 조 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 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 고
								바닥 면적	연 면적		
총 계				6,810	317					90	시설률: 4.65<60%
조 경 시 설	소 계			278	174					7	
	파고라 ①		대림동 870 외 2필지	(198)	(134)	목 재				(6)	
	벽 천 ②		대림동 863-5	(80)	(40)	콘크리트 화강석				(1)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 조	건축물(㎡)		공작물 (기)	비 고
							규모	바닥 면적		
휴 양 시 설	소 계			86	61				38	
	의 자 ③	전 지역		(50)	(25)	목 재			(36)	등의자 12조 경의자 24조
	정 자 ④	대림동 863-5 의 1필지		(36)	(36)				(2)	
유 회 시 설	소 계			122	81				3	
	조 합 늘 어 대 ⑤	대림동 870		(98)	(65)	목 재			(1)	
	정 령 직 ⑥	대림동 869-2		(18)	(12)	철 재			(1)	
	시 이 소 ⑦	대림동 869-2		(6)	(4)	철 재			(1)	
편 익 시 설	소 계			1	1				1	
	음 수 대 ⑧	대림동 870		(1)	(1)	콘크리트			(1)	
운 동 시 설	소 계								3	
	철 봉 ⑨	대림동 870				철 재			(1)	
	평 균 대 ⑩	대림동 869-2				목 재			(1)	
	광 평 봉 ⑪	대림동 870							(1)	
관 리 시 설	소 계								38	
	공 원 등 ⑫	전 지역				주 질			(15)	
	볼 라 드 ⑬					화 강 석			(8)	
	후 격 등 ⑭					스틸레스			(15)	
녹 지 및 기 타	소 계			6,323						
	녹 지 기 타			(6,323)						

●양천구고시제1994-9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실시계획변경
인가(기간연장)

1. 양천구고시 제1993-18호(93. 5. 12) 도
시계획사업(학교) 변경 실시계획 인가된
봉영여자중학교, 양천여자고등학교에 대하
여 도시계획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관한위임조례 제
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학교)
실시계획 변경인가(기간연장)하였기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
정에 의거 이를 고지합니다.

2. 관계도시는 양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1994. 3. 5

양 천 구 청 장

가. 사업사행지: 양천구 신정동 325-8
(변경 없음)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학교)
(변경 없음)

명칭: 봉영여자중학교, 양천여자고등
학교 (변경 없음)

다. 면적 또는 규모

[대지: 13,500㎡(변경 없음)
 건물연면적: 13,321.4㎡(변경 없음)
 라. 사업시행자: 양천구 신정동 325-8(변경 없음) 학교법인 독양학원 이사장 성옥자
 마. 사업의 착수 준공연월일
 [당초: 88. 6. 20~93. 12. 30
 변경: 88. 6. 20~94. 6. 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없음.
 사. 토지건물의 소유자: 학교법인 독양학원 이사장 성옥자(변경 없음)

원 이사장 성옥자(변경 없음)
●송파구고시제1994-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4. 3. 5
송 파 구 청 장

허 가 연월일	위 치	지 목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 기간	허가를 받은 자	
						주 소	성 명
94. 2.	성내천 ~성내제7교 구간	성내제1교 하천 제방	30,375㎡	성내천제정비 및 고수부지 공원화	영구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29-5	송 파 구청장

구 공 고

●강동구공고제1994-6호
 제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다음 공고기간내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

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1994. 3. 5
강 동 구 청 장

1. 기간: 1994. 3. 7~1994. 9. 7(6개월)
2. 신고장소: 강동구청 제2과(480-1340~3)

3. 재산의 표시

재산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비 고
강동구 고덕동	55-1	임 야	7	
"	69-4	임 야	63	
"	69-5	임 야	109	
"	476	임 야	407	
강동구 상일동	산 27	임 야	397	
강동구 하일동	111-3	임 야	7	
"	117-3	임 야	36	
"	197-3	임 야	142	
"	206-4	임 야	13	
강동구 둔촌동	229-2	임 야	376	

재산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비 고
강동구 암사동	산 12-2	임 야	3	
"	산 49-2	임 야	496	
"	산 63-7	임 야	496	
강동구 성내동	7-3	도 로	87	

●영등포구공고제1994-21호

도시계획사업(도립제3어린이공원의1개소) 실시계획인가를위한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28호(94. 2. 12)로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된 영등포구 도립 제3어린이공원, 대림 제3어린이공원 도시계획사업(공원) 실시인가 이전에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공고합니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영등포구 공원녹지과에 비치

하여 광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공고하고 있으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시는 의견서를 공람공고기간내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 3. 5

영 등 포 구 청 장

가. 사업종류: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

나. 사업명시: 도립 제3어린이공원, 대림 제3어린이공원

다. 사업시행자: 영등포구청장

라. 사업기간: 인가일~1999년 12월 31일

마.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 별 항

도시계획시설(도립 제3어린이 공원) 조성계획 결정시설별 총괄표(최초결정)

(단위: m)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진 축 물			공작물(기)	비 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3,071	360			103	시설률 11.72<60	
조경시설	198	134			6		
휴양시설	34	34			48		
유희시설	250	169			8		
편익시설	2	1			1		
운동시설	22	22			5		
관리시설					35		
녹지 및 기타	2,565						

시 설 조 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 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 고
								바닥 면적	연 면적		
총계				3,071	360					103	시설률 : 11.72 < 60%
조 경 사 설	소 계			198	134					6	
	파고라 ①		도림동 23-2 외 2필지	(198)	(134)	목 재				(6)	
휴 양 사 설	소 계			34	34					48	
	의 자 ②		전 지역	(34)	(34)	목 재				(48)	등의자 24조, 평의자 24조
유 회 사 설	소 계			250	169					8	
	조 합 놀이대 ③		도림동 23-4 외 1필지	(196)	(131)	목 재				(2)	
	점글점 ④		도림동 23-7 외 1필지	(36)	(24)	철 재				(2)	
	시이소 ⑤		도림동 23-2 외 1필지	(12)	(8)	철 재				(2)	
	래 더 ⑥		도림동 23-6 외 1필지	(6)	(6)	목 재				(2)	
	편 익 사 설	소 계		2	1						1
	음수대 ⑦		도림동 23-7	(2)	(1)	콘크리트				(1)	
운 동 사 설	소 계			22	22					5	
	철 분 균형대 ⑧		도림동 23-11			철 재				(2)	
	균형대 ⑨		도림동 23-7 외 1필지			목 재				(2)	
	씨름장 ⑩		도림동 23-2	(22)	(22)					(1)	
관 리 사 설	소 계									35	
	공원등 ⑪		전 지역			주 철				(10)	
	블라드 ⑫		"			화강석				(10)	
	휴지등 ⑬		"			스텐레스				(15)	
녹지 및 기 타	소 계		2,565								
	녹 지		(2,565)								

도시계획시설(대림계3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시설별 총괄표(최초결정)

(단위: m²)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6,810	317				90	시설률 4.65 < 60%
조경시설	278	174				7	
휴양시설	86	61				38	
유희시설	122	81				3	
편익시설	1	1				1	
운동시설						3	
관리시설						38	
녹지 및 기타	6,323						

시설 조 사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m ²)	시설면적 (m ²)	구조	규모	건축물(m ²)		공작물(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계				6,810	317					90	시설률 : 4.65 < 60%
조경시설	소계			278	174					7	
	파고라	①	대림동 870-외 2필지	(198)	(134)	목재				(6)	
	벽천	②	대림동 863-5	(80)	(40)	콘크리트 화강석				(1)	
휴양시설	소계			86	61					38	
	의자	③	전지역	(50)	(25)	목재				(36)	등 의자 12조, 평 의자 24조
	정자	④	대림동 863-5 외 1필지	(36)	(36)	"				(2)	
유희시설	소계			122	81					3	
	조합	⑤	대림동 870	(98)	(65)	목재				(1)	
	놀이대	⑥	대림동 869-2	(18)	(12)	철재				(1)	
	정글짐	⑦	대림동 869-2	(6)	(4)	철재				(2)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 면적		
편의 시설	소계			1	1					1	
	음수대	㉓	대림동 870	(1)	(1)	콘크리트				(1)	
운동 시설	소계									3	
	철봉	㉔	대림동 870			철재				(1)	
	균형대	㉕	대림동 869-2			목재				(1)	
	평행봉	㉖	대림동 870							(1)	
관리 시설	소계									38	
	공원동	㉗	전지역			주철				(15)	
	블라드	㉘	"			화강석				(8)	
	휴지통	㉙	"			스텐레스				(15)	
녹지 및 기타	소계			6,323							
	녹지			(6,323)							

●강서구공고제1994-25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공고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의 양도를 인가하였

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4. 3. 5
강서구청장

양도인가일	1994. 2. 22	
업종 및 면허번호	창호 대구 제08-30호	
구분	양도자	양수자
상호	(주)상아한글라스	(주)상아한글라스
영업소재지	강서구 화곡동 380-10	경기도 안산시 부곡동 685-11
영업대표자	김중송	권오진
도급한도액	550,000,000원	550,000,000원

●구로구공고제1994-28호

도시공원시설의설치관리자공모공고
도시공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시설의 설치·관리할 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1994. 3. 5
구로구청장

- 대상공원 및 공원시설
가. 공원의 종류·명칭: 신정제1근린공원

나. 위치(면적): 구로구 고척동 1-승 일대
156,928㎡, 양천구 신정동 산 102
5,962㎡

다. 시설: 테니스장 6면, 관리사무소 1
동, 기타녹지 조경시설

- 응모자격: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4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단, 토지소유자
는 그러하지 아니함)
- 등록

가. 등록기간: 신문에 공고된 날로부터 14일간
 나. 등록장소: 구로구청 공원녹지과
 다. 등록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원증명서, 자필이력서 각 1통
- 공원조성능력(재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
- 지역사회발전(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통: 체육관련 경력증명, 자격증 등(있는 자에 한함)

4. 전형방법
 가. 서류심사로 결정하고 개별통지하며 등록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본 결정은 무효로 함.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로구청 공원녹지과로 문의 바랍니다(860-2395~7).

●도봉구공고제1994-42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공고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 양도를 인가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4. 3. 5
 도봉구청장

인가일자	업종 및 면허번호	양도자			양수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1994. 2. 24	설비공사업 92-12-19	(주)이현 씨.이	도봉구 창동 703	이수원 윤석중	(주)이현 에너지	도봉구 수유동 279-90	이수환

●서초구공고제1994-49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공고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의 양도를 인가하였

기 동법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4. 3. 5
 서초구청장

인가일자	양도업종 및 면허번호	양도자			양수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1994. 2. 22	철콘 92-서울-10-263 포장유지 89-서울-16-18	원진건설	서초구 서초동 1577-12	최연호	백운건설	동대문구 강안동 414-12	권익섭

●서초구공고제1994-50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공고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의 양도를 인가하였

기 동법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4. 3. 5
 서초구청장

인 가 일 자	양도업종 및 면허번호	양 도 자			양 수 자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1994. 2. 24	조경시설물 92-서울-19-43	(주)삼신 스프레이	서초구 서초동 1580-6	유진태	(주) 금탑조경	강남구 도곡동 458-3	이은실

●**강남구공고제1994-62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공고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의 양도를 인가하였

기 동법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
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4. 3. 5

강 남 구 청 장

인 가 일 자	양도업종 및 면허번호	양 도 자			양 수 자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1994. 2. 24	설비 92-서울-12-125	서진산업	강남구 도곡동 413-2	김덕진	(주)동화 프렌트	서대문구 남가 좌2동 333-15	최주동

사업소고시

●**한강관리사업소고시
제1994-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
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4. 3. 5

한강관리사업소장

허가연월일	위 치	지목	점용면적 (㎡)	점용 목적	점용기간	허가 를 받 은 자	
						주 소	성 명
1994. 2. 1	강서구 개화동 150선(한강)	하천	18,000㎡	훈련장	1994. 12. 31까지	구로구 독산동 사서함 151호	육군 제9287 부대장

인사발령

6급이하 기술직공무원 파견

●1994년 2월 23일자

영 제88호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부 서	직 급
1	임 중 범 560627-1010019	감사원 파견근무 (1994. 2. 23~3. 10)	종합건설본부	지방토목 주 사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2	최동필 600301-1018217	감사원 과점근무 (94. 2. 23~3. 10)	종합건설본부	지방보목 주사
기능직 직위해제				
◎1994년 2월 23일자			영 제89호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박형규 671120-1074230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제1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 제함(1994. 2. 23~1994. 5. 22)	교통방송본부	지방운전원 (10등급)
6급이하 공무원 전보 및 인사교류				
◎1994년 2월 24일자			영 제90호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강신집	서울600년사업추진본부 기획조정담당관	건설행정과	지방행정 주사
2	김성택	"	한강관리사업소	"
3	심개인	"	서초구	"
4	이영복	"	구로구	"
5	이치관	"	회계과	지방행정 주사보
6	이미경	"	중구	"
7	강장수	"	은평구	"
8	안장환	"	마포구	"
9	유석운	"	동작구	"
10	최선호	"	중구	"
11	이윤재	"	영등포구	지방행정 서기
12	오관홍	"	도봉구	"
13	남명희	"	내무국	지방사무 보조원 (타자: 9등급)
14	최미경	"	공원과	지방사무 보조원 (타자: 10등급)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부 서	직 급
15	이 상 태	영등포구 전 출	서 대 문 구	지방행정 주 사 보
16	심 혜 택	구 로 구 전 출	"	지방행정 서 기
17	김 성 언	강 서 구 전 출	성 동 구	지방행정 서 기 보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 ●1994년 2월 24일자 영 제91호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부 서	직 급
1	손 종 석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사장에 임함	신	규
5급 공무원 전보 ●1994년 2월 24일자 영 제92호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부 서	직 급
1	송 수 향	서울600년사업추진본부 기획조정담당관(행사추진)	내 무 국	지방행정 사 무 관
2	방 우 달	서울600년사업추진본부 기획조정담당관(전시공연 1)	"	"
기능직 공무원 면직 ●1994년 2월 19일자 영 제33호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부 서	직 급
1	김 력 수 620907-1536217	사망으로 인하여 면직	가양학수 처리(사)	지방전기원 (10등급)

9급 기술직공무원 면직

●1994년 2월 26일자

영 제94호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양유정 701103-2821025	원예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중립하수 처리(사)	지방화공 서기보

5급 기술직 공무원 전보

●1994년 2월 22일자

영 제27호

연번	성명	발령사항			비고
		부서	직위	직급	
1	윤원상	생산관리부	수질과장	지방화공사무관	

기술직공무원 소내 인사발령 현황 보고

●1994년 2월 23일자

주민등록 번호	성명	발령			원직			발령 일자
		부서	직위	직급	부서	직위	직급	
550919-	장시명	강서수도사업소		지방수도부동	노량진정수		지방수도토목	1964.
1042121	(張時明)	(공무과)		주사보	사덜스		주사보	2. 22